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67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의자 : 강선영 · 박준태 · 유용원
이인선 · 이현승 · 성일종
임종득 · 이달희 · 한기호
이만희 · 주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간부에 대해서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 이외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 간부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일반공무원과 군 간부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현행법 개정을 권고하였음.

이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을 차별없이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3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을 “군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제2조 각 호 외의 군인이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p> <p>1. ~ 3. (생 략)</p> <p>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p>	<p>제2조(적용 범위) -----</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33조(장애보상금) ① 군인-----</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